

“ 회원과 동행하는 주택관리사 주권시대 ”



대한주택관리사협회

수신자 수신처 참조

(참조) 사무국장

제 목 상조사업 개시 알림

1. 2018년 제1차 공제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상조사업과 관련입니다.

2. 협회에서는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상조사업 별첨 상조세칙과 같이 2018. 4. 1.부터 시행하오니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상조세칙

상조이용방법 끝.

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



수신자 시 도회장

과장 김상희

국장 홍준식

총장 박병남

단장 홍길순

회장 황장전

협조자

시행 협회공제 29 (2018. 03.16)

접수

우 08513 서울 금천구 벚꽃로244 벽산디지털밸리 5차 1512호 / <http://www.khmagj.org>

전화 1577-9332

전송 02-786-9557

/ gongje@khma.org

/ 공개

상 조 세 칙

제1조 【목 적】

이 세칙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의 상조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여 회원의 사기 앙양과 복지 증진을 기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【지원 대상】

- ① 정관 제7조(회원)에 따라 1년 이상이 경과한 회원으로 지원일 현재 6개월 이상 회비가 연체하지 아니한 자.
- ② 정관 제7조(회원)에 따라 1년 이상 경과한 회원이 회비 면제 대상으로 전환후 2년 이상경과 되지 아니한 자

제3조 【적용 범위】

상조 적용은 제2조 지원대상자의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① 회원 본인 사망
- ② 회원의 배우자 사망
- ③ 회원(배우자 포함)의 직계 존속 사망
- ④ 회원의 직계 비속 사망

제4조 【지원 범위】

대한주택관리사협회 로고가 새겨진 일회용품 150 세트

(밥그릇, 국그릇, 접시, 종이컵, 소주컵, 등 10여종 150명 분 종합세트)

제5조 【상조물품 신청 및 지원】

- ① 지원 대상 회원은 제휴사 또는 시 도회에 유선으로 통보한다.
- ② 제휴사는 신청내용을 해당 시 도에 통보한다.
- ③ 상조물품 지원 금액은 본회에서 정산한다.
- ④ 제4조항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회원에 대하여는 공급금액(운송비제외)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 【지원대상의 확인】

협회에서는 지원 대상여부를 제휴사가 확인 가능하게 조치한다.

제7조 【소멸시효】

이 세칙에 의한 상조지원은 경조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된다.

부 칙

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상 조 이 용 방 법

1. 지원 요청

- 협력사인 국민상조 또는 해당 시 도에 통보
※ 국민상조 : 1899 - 6414
- 알릴 사항 : 장례식장 상호, 주소 및 연락처

2. 회원으로부터 상조이용신청을 받은 시 도

- 통보 받은 즉시 지원 대상 여부 확인
- 협력사에 유선 통보
(통보 지연에 따른 지원 지연 예방)

3. 일회용 물품 수령시

- 수령증 서명날인